독일의 유해미디어 규제 제도

최 종 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학박사)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유해미디어 심의
1. 방송 내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2.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

Ⅲ. RStV와 JMStV
1.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
2.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Ⅳ. 나오며

'글로컬(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들어가며

미디어란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는데, 현대 사회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상호 소통 및 정보 전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전기통신설비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터넷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거대한 정보 공유 장치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방송이 공중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오늘날 인터넷과 각 종 인터넷 관련 장비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방송 매체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독립적인 유사 방송 등이 출현하면서 방송과 인터넷의 경계획정이 모호해지면서 두 매체간의 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오늘날 휴대용 전화기 장치가 발달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휴대폰을 통해 각 종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휴대폰이 미디어 매체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유사방송, 실시간 방송 등 신유형의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으로 인해 방송과 인터넷의 경계 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시청자의 시청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8월 10일자 Broadband TV News에 의하면, 독일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28% 이상이 Netflix, maxdome, Amzon Prime, Watchever or Sky Snap과 같은 유료 VOD(video-on-deman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기존에 방송사의 편성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시청방식에서 시청자가 방송사의 편성계획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는 능동적 시청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신유형의 미디어는 우리 헌법 제21조[2]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출판자유의 기본권을 향유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Verfassung)이란 용어 대신, 기본법(Grundgesetz)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5조[3]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1) http://www.broadbandtvnews.com/2015/08/10/over-a-quarter-of-germans-use-paid-for-vod/.

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국민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향유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가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 등 순기능도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4]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역기능도 있어, 유해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가 기본법 제5조 제2항인 것이다. 따라서 독일 유해미디어 규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즉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을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글에서는 독일의 유해미디어 심의제도를 개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미디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중 16개의 주(州)가 협약을 체결하여 방송과 텔레미디어[5] 내의 불법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존엄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간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이하 'JMStV'라고 한다) 내용을 개관하고, 2015년 5월 15일 개정된 내용 중 텔레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독일의 유해미디어 규제 제도를 논하고자 한다.

Ⅱ. 독일의 유해미디어 심의

3)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5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2) 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 (3) Kunst und Wissenschaft, Forschung und Lehre sind frei. Die Freiheit der Lehre entbindet nicht von der Treue zur Verfassung,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gg/gesamt.pdf.

4) 독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은 14세 미만의 자,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텔레미디어(Telemedia)란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이하 'TMG'라고 한다)에 따라 전송되거나 접근되는 미디어를 뜻한다. 2013년 기준, 독일의 인터넷 이용률은 83.96%로 세계 22위이다, http://isis.kisa.or.kr/sub05/?pageId=050400.

1. 방송 내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1) 통제 절차[6](control procedures)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 내용의 통제 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① 주 미디어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모니터하여 문제가 있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이하 'KJM'라고 한다)에 통보한다. ② KJM은 심사위원회(examining boards)를 개최하여 JMStV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KJM 심사위원회는 주 미디어청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정부의 연방 청소년청과 연방 정부의 연방 청소년청에 의해 임명된다. 방송 내용 관련, 심사위원회는 방송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개별 방송이 세부적으로 행정 절차에 부합되게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KJM 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통상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초점으로 분석을 하는 5명으로 이루어진 심사 그룹에 의해 준비되고 건의된 내용이다. ③ JMStV 규정을 위반한 방송 내용이 있는 경우, KJM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결정한다. 제재의 수위는 불법행위로 인해 미성년자 성장을 저해한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JMStV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는 '고소, 방송시간의 제한, 전송 금지, 행정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징수절차 착수, 형법 위반의 경우 주 검찰청에 이송'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방송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 미디어청에 의해 집행된다.

(2) 평가 기준(assessment criteria)

방송과 텔레미디어 콘텐츠의 평가는 불법정보와 미성년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로 구별하고 있는 JMStV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다.

(3) 불법정보(illegal content)

독일의 경우, '전쟁 또는 폭력을 찬양하는 내용, 동물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폭력적인 포르노그래피를 보여주는 내용 등'과 같은 불법정보는 방송 서비스 또는 텔레미디

6) http://www.kjm-online.de/en/broadcasting/control-procedures.html.

어 서비스에서 유통될 수 없다. JMStV 제4조는 '독일 헌법에 의해 금지된 조직의 휘장을 사용하는 내용,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포르노그래피,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 아동 또는 청소년이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내용,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4)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eontent impairing development)

JMStV 제5조는 기술적 통제기법으로 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상으로 미성년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내용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인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성을 가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다. 미성년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폭력 묘사 정보는 '장르의 현실적 묘사 방향, 방송의 전반적 분위기, 폭력장면의 광범위성,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 영화의 주제'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고, 미성년자의 성장을 저해하는 성적 묘사 정보는 '비정상적인 섹스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 묘사, 아동 또는 청소년이 매춘 또는 난잡한 행동을 이상화하거나 경시할 수 있게 하는 성생활과 폭력에 있어서의 차별적 패턴을 포함하는 성행위 역할의 고정 관념'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한다.

(5) 적용제외 신청(applications for exceptions)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DVD 또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유통되는 영화는 연령 등급 권한이 부여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이하 'FSF'라고 한다)라는 자율규제 기구에 의해 등급이 분류된다. FSF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를 위해 JMStV는 명확한 구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적용제외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JM 또는 상업 방송을 위한 자율규제 기구에 적용제외 신청서와 함께 영화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로부터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KJM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KJM 심사위원회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업 방송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상업 방송 자율규제 기구인 FSF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후 FSF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6) 자율규제(self-regulation)

독일은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원칙에 따라 방송 콘텐츠 및 텔레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는데, KJM은 JMStV 제19가 규정하고 있는 자율규제 기구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자율규제 기구가 결정한 방송 또는 텔레미디어 콘텐츠가 자율규제 기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율규제 기구가 법적 권한 밖의 결정을 하는 경우, KJM은 그 결정이 권한 밖의 사항인지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KJM는 자율 규제 기관이 준수해야 법령 및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법령 및 지침에는 방송서비스에서의 영화 편성, 자율규제 기관의 영화 등급 분류의 예외 또는 심의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규제 기관이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KJM에 제출하여야 하며, KJM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 기구 대표를 상대로 청문을 할 수 있다. 자율규제 기구가 KJM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심사관의 결정을 득해야 하는데,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심사관에는 사회 각 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 보호

(1) 통제 절차(control procedures)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이 있는 텔레미디어 콘텐츠 통제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① 해당 콘텐츠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텔레미디어내에 유통되는 콘텐츠는 청소년보호 사이트[7](jugendschutz.net)와 미디어청에 의해 검토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콘텐츠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KJM으로 전달된다. ② 주 미디어청의 장, 주 청소년청의 대표, 연방 청소년청의 대표로 구성된 KJM의 심의위원회는 개별 사건별로 JMStV 규정의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KJM의 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텔레미디어 콘텐츠를 심의한 후 기소를 할지, 행정상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콘텐츠 목록작성을 위

7) jugendschutz.net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독일 모든 주의 통합조직으로써 주 최고청소년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KJM과 주 최고청소년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jugendschutz.net은 텔레미디어 콘텐츠를 심사하고, JMStV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와 KJM에 그 사실을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JMStV 제18조).

한 신청 업무를 수행한다. 심사위원장은 KJM을 대리하여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BPjM의 indexed 콘텐츠 목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③ JMStV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KJM은 텔레미디어 콘텐츠 제공자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부여하는데, JMStV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즉,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경고,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금지 조치, 호스트 제공자 또는 엑세스 제공자에 대한 차단조치(Blocking requirement)가 취해진다. 행정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징수절차 착수, 형법 위반의 경우 주 검찰청에 이송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제공자(provider)에게 부과되고, 주 미디어청에 의해 집행된다.

(2) 평가 기준(assessment criteria), 불법정보(illegal content) 및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content impairing development)

텔레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있어 불법정보와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는 방송 내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있어 평가 기준, 불법정보와 성장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 기술한 'Ⅱ. 1. 나. 다. 라.'의 내용과 동일하다.

(3) 제한된 이용자 그룹(closed user groups)

JMStV에 의하면 포르노그래픽 콘텐츠, 리스트에 등재된 콘텐츠와 제공자에 의해 콘텐츠 접근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등 미성년자의 성장을 명백하고 심각하게 저해하는 콘텐츠는 제한된 이용자 그룹(성인)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된 이용자 그룹(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령 인증 시스템(age verification systems)이 이용된다.

Ⅲ. RStV와 JMStV

1.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은(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8] ; Rundfunkstaatsvertrag, 이하 'RStV'라고 한다) 통일 독일에서의 연방 주들의 이중적 방

송시스템인 공공서비스와 상업 방송의 규제 원칙을 담고 있는 주간협약이다. 이 협약은 공공서비스와 상업 방송에 모두 적용되는 I. Abschnitt: Allgemeine Vorschriften, IV. Abschnitt: Revision, Ordnungswidrigkeiten - VII. Abschnitt: Übergangs- und Schlussvorschriften[9], 공공서비스 방송에만 적용되는 II. Abschnitt: Vorschriften für den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10], 상업 방송에만 적용되는 III. Abschnitt: Vorschriften für den privaten Rundfunk[11]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간협약의 의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방송과 통신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고 방송에 대한 권한과 텔레미디어에 대한 일부 권한을 주정부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간협약

독일의 16개 주(州)[12]는 전자적 정보미디어(electronic information media) 및 통신미디어(communication media)내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저해하거나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전자적 정보미디어(electronic information media) 및 통신미디어(communication media)내의 인간의 존엄성 또는 독일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JMStV를 제정하였다.

(1) 법적 근거

독일의 경우 방송과 통신의 입법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다. 즉, 독일은 연방과 주(州)의 입법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주(州)

8) vom 31.08.1991, in der Fassung des Fünfzehnten Staatsvertrages zur Änderung rundfunkrechtlicher Staatsverträge vom 15./21. Dezember 2010 (vgl. GVBl. Berlin 2011 S. 211), in Kraft getreten am 01.01.2013; http://www.kjm-online.de/fileadmin/Download_KJM/Recht/15_RStV_01-01-2013_deutsch.pdf.

9) Sections I(General Provisions), IV(Appeal, Administrative Offences)- VII(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10) Section II(Provisions for Public-Service Broadcasting).

11) Section III(Provisions for Commercial Broadcasting).

12) 바덴-뷔르템베르크 주(State of 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 주(Free State of Bavaria), 베를린 주(State of Berlin), 브란덴부르크 주(State of Brandenburg), 브레멘 주(Free Hanseatic City of Bremen), 함부르크 주(Free and Hanseatic City of Hamburg), 헤센 주(State of Hesse), 메클렌부르크-포어폼페른 주(State of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니더작센 주(State of Lower Saxony),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라인란트-팔츠 주(State of Rhineland-Palatinate), 잘란트 주(Saarland), 작센 주(Free State of Saxony), 작센-안할트 주(State of Saxony-Anhalt),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State of Schleswig-Holstein) 및 튀링엔 주(Free State of Thuringia).

가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70조[13]). 기본법 제73조[14]에 따르면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에 대해서는 연방이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에 대해서는 전속적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방송에 대한 입법권은 주(州)가 지니게 되었다. 방송에 대한 입법권을 지닌 주(州)는 유해미디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JMStV를 제정하였다.

(2) 심의기구

주 미디어청은 상업 방송과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준수여부 확인의무 이행과 JMStV 규정에 따른 의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설치하였다.[15] KJM은 상업 방송과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가 JMStV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

13)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70 (1) Die Länder haben das Recht der Gesetzgebung, soweit dieses Grundgesetz nicht dem Bunde Gesetzgebungsbefugnisse verleiht. (2) Die Abgrenzung der Zuständigkeit zwischen Bund und Ländern bemißt sich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rundgesetzes über die ausschließliche und 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

14)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73 (1) Der Bund hat die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über: 1. die auswärtigen Angelegenheiten sowie die Verteidigung einschließ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2. die Staatsangehörigkeit im Bunde; 3. die Freizügigkeit, das Paßwesen, das Melde- und Ausweiswesen, die Ein- und Auswanderung und die Auslieferung; 4. das Währungs-, Geld- und Münzwesen, Maße und Gewichte sowie die Zeitbestimmung; 5. die Einheit des Zoll- und Handelsgebietes, die Handels- und Schiffahrtsverträge, die Freizügigkeit des Warenverkehrs und den Waren- und Zahlungsverkehr mit dem Auslande einschließlich des Zoll- und Grenzschutzes; 5a. den Schutz deutschen Kulturgutes gegen Abwanderung ins Ausland; 6. den Luftverkehr; 6a. den Verkehr von Eisenbahnen, die ganz oder mehrheitlich im Eigentum des Bundes stehen (Eisenbahnen des Bundes), den Bau, die Unterhaltung und das Betreiben von Schienenwegen der Eisenbahnen des Bundes sowie die Erhebung von Entgelten für die Benutzung dieser Schienenwege; 7. das Postwesen und die Telekommunikation; 8. die Rechtsverhältnisse der im Dienste des Bundes und der bundesunmittelbaren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es stehenden Personen; 9. den gewerblichen Rechtsschutz, das Urheberrecht und das Verlagsrecht; 9a. die Abwehr von Gefahren des internationalen Terrorismus durch das Bundeskriminalpolizeiamt in Fällen, in denen eine länderübergreifende Gefahr vorliegt, die Zuständigkeit einer Landespolizeibehörde nicht erkennbar ist oder die oberste Landesbehörde um eine Übernahme ersucht; 10.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a) in der Kriminalpolizei, b) zum Schutze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des Bestandes und der Sicherheit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Verfassungsschutz) und c) zum Schutze gegen Bestrebungen im Bundesgebiet, die durch Anwendung von Gewalt oder darauf gerichtete Vorbereitungshandlungen auswärtige Belang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fährden, sowie die Einrichtung eines Bundeskriminalpolizeiamtes und die internationale Verbrechensbekämpfung; 11. die Statistik für Bundeszwecke; 12. das Waffen- und das Sprengstoffrecht; 13. die Versorgung der Kriegsbeschädigten und Kriegshinterbliebenen und die Fürsorge für die ehemaligen Kriegsgefangenen; 14. die Erzeugung und Nutzung der Kernenergie zu friedlichen Zwecken,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von Anlagen, die diesen Zwecken dienen, den Schutz gegen Gefahren, die bei Freiwerden von Kernenergie oder durch ionisierende Strahlen entstehen, und die Beseitigung radioaktiver Stoffe.
(2) Gesetze nach Absatz 1 Nr. 9a bedürfen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15) http://www.kjm-online.de/die-kjm.html.

한 미디어를 심사하는 연방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유해미디어 목록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공하고, 연방심사위원회에 유해미디어 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16]

(3) JMStV에 따른 불법정보

JMStV 제4조[17]에 규정된 불법정보(illegal content)는 "① 형법 제86조에 규정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거나 국가 사이에 이해될 수 없는 정보, ② 형법 제86조a에 규정된 것으로 독일 헌법에 따라 금지된 단체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정보, ③ 특정 국민, 국가적·인종적·종교적·윤리적 그룹에 대해 증오심을 유발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정보,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적 정보, 악의적 정보, 비하적 정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④ 국제형법(Völkerstrafgesetzbuch(VStGB) of 26 June 2002) 제6조 제1항[18] 및 제7조 제1항[19]에 명시된 국가사회주의 정권하에 행해진 행위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정보, ⑤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폭력행위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격적 또는 잔혹성을 나타내는 정보(가상정보도 포함), ⑥ 형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불법정보로 규정된 행위를 하도록 제공하는 정보, ⑦ 전쟁을 찬양하는 정보, ⑧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정보, 특히 실존인물, 죽어가는 사람,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어떠한 정당한 공적 판단 없이 실제 사실이 보고되는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보(이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동의 여부를 불문함), ⑨ 아동 또는 청소년을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는 정보(가상묘사에도 적용됨), ⑩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적 남용, 동물과 사람

16)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14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17 Verfahren der KJM.

17)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4 Unzulassige Angebote.

18) Völkerstrafgesetzbuch (VStGB) § 6 Völkermord; 국제법에 반하는 형법규정을 소개하는 법률 제6조는 대량학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국가, 인종, 종교 그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룹 구성원에 대한 살인, 형법 제226조에 언급된 유형과 같이 그룹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심각한 유해를 야기하는 경우,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육체적 상해를 고의적으로 의도한 경우, 구성원 간 출생을 방해할 대책을 부과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특정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아동을 이전시키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파괴의도를 가진 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 Völkerstrafgesetzbuch (VStGB) § 7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국제법에 반하는 형법규정을 소개하는 법률 제7조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시민에 대하여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살인 등의 경우에는 종신형, 강간 등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22조조에 언급된 유형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가한 경우' 등에는 8~10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의 성적행위 정보(가상묘사에도 적용됨), ⑪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목록 중 B 및 D 또는 이 목록에 포함된 전부 또는 대부분 유사한 정보"로 총 11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20]

(4) 2015년 JMStV 주요 개정 내용

2015년 5월 15일 JMStV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전 JMStV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JMStV는 전기적 정보미디어와 커뮤니케에션에 적용되면서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전달되거나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이하 'TKG'라고 한다) 제3조 제25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서비스인 통신법 제3조 제24호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후 JMStV의 적용 범위는 RStV의 방송과 텔레미디어로 확대되었고, 통신법 제3조 제24호[21]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경우도 JMStV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② 어린이(14세 미만의 자)와 청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던 JMStV 제3조는 삭제되었다.

③ 불법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JMStV 제4조 제4호는 국제 형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형태의 국가사회주의 통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공공의 평화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또는 나치즘적인 폭력과 독재정치를 칭송하고 그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에 상처를 입히면서 공적인 평화를 저해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또한 JMStV 제4조 제10호는 18세 미만의 자를 상대로 한 외설적 또는 폭력적 학대, 사람과 동물의 성행위(가상적 묘사에도 적용)로 개정되었다.

④ 성장저해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JMStV 제5조 제1항은 성장저해정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연령을 6세 미만, 6세 이상에서 12세 미만, 12세 이상에서 16세 미만, 16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⑤ 청소년보호 사이트와 관련하여, 주 미디어청 등의 재정지원 기한이 삭제되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⑥ 자율규제기관과 관련하여, 승인된 자율규제기관은 JMStV 규정과 제휴 회원들에 의해 발행된 지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20) 최종선,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유해미디어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308~309면.

21)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 3 Begriffsbestimmungen 24. 'Telekommunikationsdienste' in der Regel gegen Entgelt erbrachte Dienste, die ganz oderüberwiegend in der Übertragung von Signalen über Telekommunikationsnetze bestehen, einschließlich Übertragungsdienste in Rundfunknetzen.

〈표 1〉 JMStV 주요 개정 내용[22]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범위 (§2 Geltungsbereich)	(1) Dieser Staatsvertrag gilt für elektronisch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medien (Rundfunk und Telemedien).	(1) Dieser Staatsvertrag gilt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im Sinne des Rundfunkstaatsvertrages.
개념정의 (§3 Begriffsbestimmungen)	(1) Kind im Sinne dieses Staatsvertrages ist, wer noch nicht 14 Jahre, Jugendlicher, wer 14 Jahre, aber noch nicht 18 Jahre alt ist.	(삭제)
불법정보 (§4 Unzulässige Angebote)	4. eine unter der Herrschaft des Nationalsozialismus begangene Handlung der in §6 Abs. 1 und §7 Abs.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Art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leugnen oder verharmlosen,	4. eine unter der Herrschaft des Nationalsozialismus begangene Handlung der in §6 Abs. 1 und §7 Abs. 1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bezeichneten Art in einer Weise, die geeignet ist, den öffentlichen Frieden zu stören, leugnen oder verharmlosen, oder den öffentlichen Frieden in einer die Würde der Opfer verletzenden Weise dadurch stören, dass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gebilligt, verherrlicht oder gerechtfertigt wird,
성장저해정보 (§5 Entwicklungsbeeinträchtigende Angebote)	(1) (Auslassung)	(1) (Auslassung) Die Altersstufen sind: 1. ab 6 Jahren, 2. ab 12 Jahren, 3. ab 16 Jahren, 4. ab 18 Jahren.
자율규제기구 (§19 Einrichtungen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2)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überprüfen im Rahmen ihres satzungsgemäßen Aufgabenbereichs die Einhaltung der Bestimmungen dieses Staatsvertrages sowie der hierzu erlassenen Satzungen und Richtlinien bei ihnen angeschlossenen Anbietern.	(삭제)

22) Geplante Novellierung des JMStV Synopse.

Ⅳ. 나오며

이상에서 독일 유해미디어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각 주(州)별 인터넷 이용률이 상이하고[23] 연방국가의 특성상 각 주별 헌법, 법률 등 상이한 법률을 가지고 있어 유해미디어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2년 JMStV를 제정하여 상업 방송과 텔레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면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JMStV의 규제 대상 정보는 16개 주(州)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독일 헌법에 의해 금지된 조직의 휘장을 사용하는 내용,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포르노그래피,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 아동 또는 청소년이 부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내용,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 등 11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KJM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율규제 기구가 자율적으로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83.6%로 인터넷 이용자수는 41,118천명[24]으로 인터넷 이용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유해미디어 규제에 있어 특이한 것은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방송 내용과 인터넷 내용의 심의기구가 일원화되었으나, 내용심의의 구체적 근거 규정은 다원화되었다는 점이다. 즉,「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용심의 기구의 설립 근거, 직무 범위,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방송법」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방송 내용과 인터넷 내용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 내용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인종·민족·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6가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되고 있고, 인터넷 내용은 '음란정보, 권리침해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불법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해미디어 규제의 문제점은 규제 대상 정보가 광범위한 점, 규제 근거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상

23) 201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부보다는 서부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낮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 중 유독 베를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81%)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독일 수도를 타 州에 비해 배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ttps://www.bitkom.org/Presse/Presseinformation/Hamburger-und-Pfaelzer-surfen-besonders-haeufig-im-Web.html.

24)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54.

적인 관계로 규제자의 자의적 적용이 우려된다는 점, 국가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독일의 경우, 유해미디어 규제를 위해 16개 주(州)가 단일 협약을 제정하여 규제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성장저해정보로 최소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부기구가 인증한 자율규제 기구에게 일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공급자와 이용자 중심의 규제 시스템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유해미디어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최종선,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유해미디어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Geplante Novellierung des JMStV Synopse.

https://www.bitkom.org/Presse/Presseinformation/Hamburger-und-Pfaelzer-surfen-besonders-haeufig-im-Web.html.

http://www.broadbandtvnews.com/2015/08/10/over-a-quarter-of-germans-use-paid-for-vod/.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gg/gesamt.pdf.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54.

http://isis.kisa.or.kr/sub05/?pageId=050400.

http://www.kjm-online.de/die-kjm.html.

http://www.kjm-online.de/en/broadcasting/control-procedures.html.

http://www.kjm-online.de/fileadmin/Download_KJM/Recht/15_RStV_01-01-2013_deutsch.pdf.